



제439회국회(정기회)
제1차보건복지위원회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김윤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9038호)

2026. 9.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상지원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3
1. 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 계정 구분	3

I. 개요

1. 김윤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19038호)

가. 제안경위

(1) 제 안 자 : 김윤의원 등 14인

(2) 제 안 일 : 2026. 5. 21.

(3) 회 부 일 : 2026. 5. 22.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7년 시행예정인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은 필수의료를 집중적·안정적으로 지원하고 지역의 필수의료 강화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공급하기 위하여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구조는 국가 차원의 지원 사업과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지역별 맞춤형 사업 간 구분 없이 통합하여 운용·관리되도록 설계되어 있음. 이로 인하여 재원의 운용 목적과 기능이 혼재될 우려가 있고 지역별로 상이한 의료 인프라 여건과 현장의 긴급한 수요를 신속하게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

이에 특별회계를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의료 여건에 맞는 사업을 추진하는 ‘자율계정’과 국가 차원의 필수의료 기반 시설 및 인력 확충 등을 지원하는 ‘지원계정’으로 구분하고, 각각의 세입 및 세출 구조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재정 운용의 목적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또한 자율계정의 경우 정부가 시·도의 사업계획을 검토하여 그 세출예산의 규모를 정하고, 시·도 사업의 성과를 평가하여 다음 연도 예산 배분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의료 환경에 맞추어 필수의료 강화 사업을 책임 있게 기획하고 집행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확립하여 전국 어디에서나 양질의 필수의료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지역완결적 의료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안 제26조 부터 제28조까지).

Ⅱ. 주요 내용별 검토

1.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 계정 구분

가.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시행 예정[2027.3.11. 시행, 단 제5장(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은 2027.1.1. 시행]인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의 계정을 자율계정과 지원계정으로 구분하려는 것임. 특히, 자율계정의 경우 시·도별 필수의료에 관한 사업계획을 검토하여 세출예산 규모를 반영하도록 하고, 그 사업성과를 차년도 예산 편성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

현행	개정안
법률 제21439호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 제26조(회계의 운용·관리) (생략) <신설> <신설> <신설>	법률 제21439호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 제26조(회계의 운용·관리 등)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특별회계는 자율계정 및 지원계정으로 구분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자율계정의 경우 정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 필수의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시·도별 필수의료에 관한 사업계획을 검토하여 세출예산의 규모를 정하고 이를 예산안 편성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사업계획에 따라 실시된 사업의 성과를

<신 설>

제27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별소비세법」에 따라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5
2. 「관세법」에 따라 담배 등(「관세법」 별표 제4부제24류를 말한다)에 대하여 부과되는 관세액 중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로 전입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
3. 일반회계, 다른 특별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및 예수금
4.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5. 제29조에 따른 차입금
6. 그 밖의 수입금

평가하여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예산의 배분에 반영할 수 있다.

- ⑤ 그 밖에 특별회계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자율계정의 세입과 세출) ① 특별회계의 자율계정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별소비세법」에 따라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40
2. 「관세법」에 따라 담배 등(「관세법」 별표 제4부제24류를 말한다)에 대하여 부과되는 관세액 중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로 전입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
3. 특별회계의 지원계정으로부터의 전입금
4. 일반회계, 다른 특별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및 예수금
5.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6. 제29조에 따른 차입금
7. 그 밖의 수입금

② 특별회계의 자율계정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자치단체의 다음 각 목의 사업에 대한 보조
 - 가. 책임의료기관의 시설·인력·장비 확충 및 운영 지원 사업
 - 나. 지역 내 필수의료 강화 및 진료협력체계 구축·운영 지원 사업
- 다. 제20조에 따른 필수의료취약지 내 보건의료기관의 기능 강화 사업
- 라. 그 밖에 시·도의 필수의료 강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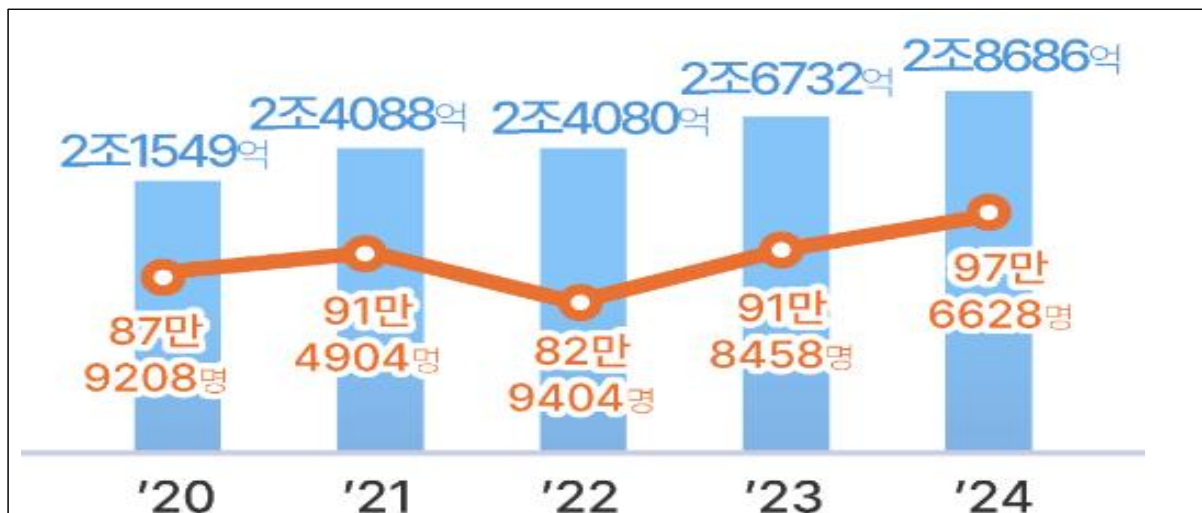
<u>제28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u> <u>1. 지역의 필수의료인력 양성 및 확충 지원에 필요한 경비</u> <u>2. 진료협력체계 구축·운영 지원에 필요한 경비</u> <u>3. 책임의료기관, 거점의료기관 및 전문센터 등의 시설·인력·장비 확충 및 운영 지원에 필요한 경비</u> <u>4. 제20조에 따른 필수의료취약지 내 보건의료기관의 시설·인력·장비 등 기반 확충에 필요한 경비</u> <u>5. 지역의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지원에 필요한 경비</u> <u>6. 그 밖에 특별회계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경비</u>	<u>2. 특별회계의 지원계정으로의 전출금</u> <u>3. 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예수금 및 차입금의 원리금의 상환</u> <u>4. 그 밖에 계정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경비</u> <u>제28조(지원계정의 세입과 세출) ① 특별회계의 지원계정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u> <u>1. 「개별소비세법」에 따라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15</u> <u>2. 특별회계의 자율계정으로부터의 전입금</u> <u>3. 일반회계, 다른 특별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및 예수금</u> <u>4.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u> <u>5. 제29조에 따른 차입금</u> <u>6. 그 밖의 수입금</u> <u>② 특별회계의 지원계정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u> <u>1. 지역의 필수의료인력 양성 및 확충 지원에 필요한 경비</u> <u>2. 진료협력체계 구축·운영 지원에 필요한 경비</u> <u>3. 책임의료기관, 거점의료기관 및 전문센터 등의 시설·인력·장비 확충 및 운영 지원에 필요한 경비</u> <u>4. 제20조에 따른 필수의료취약지 내 보건의료기관의 시설·인력·장비 등 기반 확충에 필요한 경비</u> <u>5. 제8조에 따른 실태조사 및 제9조에 따른 성과평가 등 지역필수의료 정책기반의 구축에 필요한 경비</u> <u>6. 특별회계의 자율계정으로의 전출금</u> <u>7.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예수금 및 차입금의 원리금의 상환</u> <u>8. 그 밖에 계정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경비</u>
---	---

※ 시행일: 2027.1.1.

나. 검토의견

-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인구 천명당 의원 수는 수도권 의 경우 0.75개인 반면 비수도권의 경우 0.63개이고, 수도권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받는 수도권 외에 거주하는 환자의 수도 다음과 같이 크게 증가[('22) 약 83만명 → ('24) 약 98만명]하는 등 지역 간 의료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실정임.

< 수도권 외 거주 환자의 수도권 상급종합병원 진료 현황 >



자료 : 보건복지부

한편, 2024년 상반기 기준 각 과별 전공의 확보율을 살펴보면 소아청소년과 30.9%, 심장혈관흉부외과 47.6%, 산부인과 71% 등으로 필수의료 분야의 의료인력 확보가 저조하였음.

- 이에 이와 같은 상황을 극복하고자 전국 어디서나 적시에 필수의료 제공될 수 있도록 지역완결적 의료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에 기여하기 위하여 2026년 3월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었음.

- 특히, 그동안의 일시적·단기적 지원으로는 지역필수의료 개선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감안하여 지속적·안정적 재정 지원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동법에는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를 신설하는 내용이 포함되었음.

□ 그런데 동 특별회계의 세출을 살펴보면 국가 차원의 지원 사업과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지역별 맞춤형 사업 간 구분 없이 통합하여 운용·관리되도록 설계되어 있어 지역별 상이한 여건과 현장의 수요를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음.

이에 개정안은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예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¹⁾를 참고하여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를 지원계정과 자율계정으로 분리하고 국가 차원의 지원은 지원계정에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자율적 사업을 자율계정에서 지원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그 취지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 특히, 개정안은 자율계정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 사업계획을 검토하여 세출예산 규모를 반영하도록 하고, 그 사업 성과를 차년도 예산 편성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가 될 수 있도록 하였음.

□ 다만,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 먼저, 앞서 살펴보았듯이 동법은 지난 3월 제정되어 아직 시행되지 않았고,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 관련 조문은 2027년 1월 1일

1)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예 관한 특별법」 제76조(계정의 구분) 회계는 지역자율계정, 지역지원계정, 제주특별자치도계정 및 세종특별자치시계정으로 구분한다.
그 밖의 관련 조문은 참고

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더욱이, 현행법²⁾에 따라서도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동 특별회계를 통해서 지원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그 시행경과를 살펴보고 개선을 논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참고로, 보건복지부는 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 내에 지방정부가 지역별 의료 공급·수요 현황을 바탕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필수 의료공백 해소 사업을 자율 기획하여 추진하도록 포괄적으로 재정을 지원하는 ‘지역주도 의료공백 해소 지원’ 사업을 2027회계연도 예산(약 3,605억원)으로 편성 중임.

- 또한, 자율계정과 지원계정의 각 세출을 살펴보면, 책임의료기관 지원사업, 진료협력체계 구축·운영 지원사업, 필수의료취약지 내 보건의료기관 지원사업 등을 양 계정에서 모두 규정하고 있는데, 법령에 따른 소관³⁾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2)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 제28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5. 지역의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지원에 필요한 경비

3)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 제10조(필수의료 진료협력체계 구축·운영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필수요를 지역완결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수의료 진료협력체계를 진료권별로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진료협력체계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에 따른 책임의료기관(이하 “책임의료기관”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른 필수의료 거점의료기관, 제12조에 따른 필수의료 전문센터 등 보건의료기관으로 구성되며, 책임의료기관이 그 관리 및 운영을 총괄한다.

제11조(필수의료 거점의료기관의 지정)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인력 및 장비를 갖추었거나 갖추 능력에 있다고 인정하는 보건의료기관 중에서 필수의료 거점의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제12조(전문센터 지정·지원)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필수의료 분야의 진료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수의료 전문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진료권 내에서 적절한 필수요가 공급될 수 있도록 진료권별 의료수요를 고려하여야 한다.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입법예고안)」 제5조(필수의료 진료협력체계 구축·운영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필수의료 진료협력체계(이하 “진료협력체계”라 한다)를 하나의 진료권 내에서 복수로 구축·운영할 수 있다.

제6조(필수의료 거점의료기관의 지정 요건 및 절차 등) ⑤ 시·도지사는 제4항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의견을 고려하여 시·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보건복지부장관 및 해당 신청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필수의료정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거점의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해당 거점의료기관이 소재하는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참고로, 동법 및 동법 시행규칙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책임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고, 거점의료기관은 시·도지사가 일반적으로 지정하되, 보건복지부장관은 특정 경우에 예외적으로 지정할 수 있음.

개정안에 따른 “자율계정”의 세출	개정안에 따른 “지원계정”의 세출
지방자치단체의 다음 각 목의 사업에 대한 보조	지역의 필수의료인력 양성 및 확충 지원에 필요한 경비
- <u>책임의료기관의 시설·인력·장비 확충 및 운영 지원</u> 사업	<u>책임의료기관, 거점의료기관 및 전문센터 등의 시설·인력·장비 확충 및 운영 지원</u> 에 필요한 경비
- 지역 내 필수의료 강화 및 <u>진료협력체계 구축·운영 지원</u> 사업	<u>진료협력체계 구축·운영 지원</u> 에 필요한 경비
- <u>필수의료취약지 내 보건의료기관의 기능 강화</u> 사업	<u>필수의료취약지 내 보건의료기관의 시설·인력·장비 등 기반 확충</u> 에 필요한 경비
- 그 밖에 시·도의 필수의료 강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실태조사 및 성과평가 등 지역필수의료 정책 기반의 구축에 필요한 경비
특별회계의 지원계정으로의 전출금	특별회계의 자율계정으로의 전출금
예수금 및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예수금 및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그 밖에 계정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경비	그 밖에 계정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경비

1. 시·도지사가 제2항의 지정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지정 여부를 결정하지 않은 경우
 2. 해당 거점의료기관의 대상 진료권이 둘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경우
 3. 그 밖에 필수의료 공급의 현저한 공백이 우려되는 경우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책임의료기관의 지정)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인력 및 장비를 갖추었거나 갖추 능력 있다고 인정하는 보건의료기관 중에서 책임의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이하 생략)

- 아울러, 안 제26조제4항에 따라 사업성과를 차년도 예산 편성에 반영하도록 하는 것과 관련하여 의료여건이 취약한 지역·분야 일수록 성과가 미흡하여 자칫 악순환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⁴⁾가 제기되고 있다는 점에서 지역 간 여건·환경의 차이, 분야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운영상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 그 밖에, 개정안은 자율계정의 경우 “시·도필수의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시·도별 필수의료에 관한 사업계획을 검토하여 세출예산 규모를 예산안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는데, 현행법 제17조⁵⁾에 따를 때 시·도별 필수의료에 관한 사업계획은 시·도필수의료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다. 관계부처 및 관련기관 의견

□ 보건복지부

-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를 ‘자율계정’과 ‘지원계정’으로 분리하여 국가 지원사업과 지자체의 지역 맞춤형 사업을 구분하고, 지방의 재정 자율성을 확대하려는 개정 취지에 공감함.

4) 대한의사협회, 대한산부인과 의사사회, 대한재활의학회, 부산대학교병원

5)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 제17조(시·도 필수의료위원회) ① 시·도의 필수의료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도에 시·도 필수의료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관할 지역 내 필수의료에 관한 정책 및 사업의 조정
3. 관할 지역 내 진료협력체계의 협력 및 강화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필수의료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다만, 시·도지사가 지정권을 행사하는 필수의료 거점의료기관(법 제11조⁶⁾)에 대해 지자체가 자율계정을 통해 직접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자율계정의 세출 대상에 필수의료 거점의료기관에 대한 시설·인력·장비 확충 및 운영 지원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대한의사협회

- 동 개정안은 특별회계를 지자체 중심의 자율계정과 국가중심의 지원계정으로 구분하여 필수의료 재정운용의 책임있는 기획과 집행을 제고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그 개정 취지에 적극 공감함. 다만, 다음 내용의 추가 보완이 전제된 입법 추진을 요청드리는 바임.
- 첫째, 개정안에서는 정부가 시·도 필수의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시·도별 필수의료 사업계획을 검토하여 예산을 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시·도 필수의료위원회의 구성 방식이 법률에 명시되어 있지 않음. 해당 재원이 적정하게 사용되도록 시·도 필수의료위원회에 지역의사회가 추천하는 임상 의사가 과반수 이상 참여하도록 하는 등의 현장전문가의 참여를 보장하는 구체적 위원 구성 요건이 마련될 수 있도록 법률적 보완이 필요함.
- 둘째, 개정안에서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사업 성과를 평가하여

6)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시행 2027. 3. 11.] [법률 제21439호, 2026. 3. 10., 제정] 제11조(필수의료 거점의료기관의 지정)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인력 및 장비를 갖추었거나 갖추 능력 있다고 인정하는 보건의료기관 중에서 필수의료 거점의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1. 필수의료 환자에 대한 진료
2. 필수의료 환자의 이송·전원 및 진료정보 교류
3.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교육·연구
4.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그 결과를 차년도 예산 배분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필수의료 인프라 확충과 지역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수년 이상의 장기적 투자가 필요한 사항으로, 단기적 성과지표로 재정을 통제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함. 특히, 의료여건이 취약한 지자체일수록 인프라 등이 갖추어지지 않아 초기 성과 점수가 낮을 수 밖에 없어 취약지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성과지표가 산출되면 차년도 예산이 축소되는 악순환이 발생할 수 있음. 따라서 필수의료 유지를 위한 안정적 기본 예산은 보장하되 성과가 우수한 지자체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전환이 필요함.

- 셋째, 개정안에서는 자율계정 및 지원계정의 세출 대상을 책임의료기관, 거점의료기관, 필수의료 취약지 내 보건의료기관 등의 시설·인력·장비 확충 및 운영지원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현재 우리나라 지역·필수의료의 상당 부분이 국공립 의료기관이 아닌 지역 내 민간 의료기관이 담당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지역 내 민간 의료자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보완이 필요함. 따라서 민간 의료기관에 대한 지원도 함께 법률상 명시될 수 있도록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 대한병원협회

- 개정안은 특별회계를 ‘자율계정’과 ‘지원계정’으로 구분하면서 자율계정의 세출 지원대상을 ‘책임의료기관’으로 한정하고 있어, 지역 내 중간 거점 역할을 수행하며 필수의료를 제공하는 거점의료기관 및 전문센터 등 필수의료 수행기관 간 지원체계의 불균형 발생이 우려됨. 책임의료기관 및 거점의료기관 모두 지역 내 중증·응급 환자 진료를 전담하고 환자의 이송 및 진료정보

교류와 교육·연구 등 필수의료 제공의 핵심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특별법에서 기관 간 재정지원 여부를 달리하도록 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따라서 특별회계의 지원계정과 자율계정 모두 재정투입에 대한 대상기관은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 대한치과의사협회

- 치과계 필수의료 항목(장애인 치과 진료, 취약지 치과 인프라 등)이 국가·지자체 예산 배정 항목에 명시되도록 하여 재정 집행의 형평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자율계정의 활용 범위에 지역 치과와 약국, 보건소가 유기적으로 연계된 통합 케어체계를 포함시키고, 이를 심의할 지역 보건의료 전문가 단체 중심의 거버넌스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아울러, 지자체장의 성향 또는 정치적 목적에 따라 선심·전시성 보건 사업에 예산을 오용하거나 국가가 의료기관에 인력의 파견·배치 등 과도한 행정통제를 가하는 수단으로 악용할 우려가 있다는 점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대한전공의협의회

- 영국, 호주 등의 사례를 참고하여 재정 배분 규모를 지자체의 성과·집행 실적에 연동하고, 성과 부진 시 환수·삭감의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성과 평가 시 보건복지부장관 단독이 아닌, 정치적 독립성, 전문성을 갖춘 평가·검증 기구/위원회가 성과를 검증하도록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임.

- 또한, 시·도 필수의료위원회의 의사결정, 심의, 감시의 전 과정에 전공의 등 젊은 의사의 참여를 일정 비율 이상 의무화할 필요가 있음.
- 아울러, 지자체의 보건의료 사업 집행 역량이 검증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자율계정의 사업계획, 평가결과 집행내역을 공개하고, 지역 주민·현장 의료인의 감시가 가능하도록 설계할 필요가 있음.
- 마지막으로, 자율계정과 지원계정 간 전입·전출 구조가 회계구분의 취지를 형해화하지 않도록, 계정 간 자금 이동의 요건과 한도를 하위법령에서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 대한중환자의학회

- 특별회계 지원 대상에 중환자실 운영체계 및 중환자전담전문의 확보를 명시할 필요가 있음. 특히, 중환자 의료인력 확충, 권역별 중환자 진료체계 구축, 중환자실 적정성 향상 사업이 지원계정의 우선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법령 및 하위 규정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 대한산부인과의사회

- 분만·소아 등 인프라 붕괴 위험이 높은 필수의료 취약 분야에 대해서는 평가 결과에 따른 예산 감액 미적용을 명문화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지자체 보조사업(안 제27조제2항제1호) 범위 내에 ‘지역

내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 인프라 및 민간 분만 의원·병원의 유지·운영 지원 사업’을 명시할 필요가 있음.

- 아울러, 지원계정의 배분 비율을 상향 조정하거나 국가 필수의료 전반의 안정적 지원을 위한 계정 간 전입·전출 구조의 유연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대한재활의학회

- 예산 삭감으로 인한 지방의료 붕괴 가속화 및 보건의료 관련 전문성이 낮은 지자체에 의한 행정 편의적 사업 주도 위험을 고려할 때, 지역별 상황을 고려한 차등화된 성과평가 체계 마련과 현실을 반영한 삭감 기준 완화 방안 등 사전 준비가 필요하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 대한의학회

- 지속적 예산 확보를 위해 담배 개별소비세의 특별회계 전입 비율을 점진적으로 상향 조정하고, 담뱃값 인상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부산대학교병원

- 성과평가 기반의 예산 배분 방식을 도입 하는 경우,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가 저해되지 않도록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함. 특히, 사업 성과를 평가하여 다음 연도 예산의 배분에 반영할 경우, 재정 여건 및 의료 인프라가 취약한 지자체에 대하여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보완할 필요가 있음.

문 의 처
02)6788-5503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78조(지역자율계정의 세입과 세출) ① 회계의 지역자율계정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세법」에 따른 주세의 100분의 40
2.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6조에 따라 회계에 귀속되는 과밀부담금
3.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회계에 귀속되는 개발부담금
4.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제4조제2항제4호, 제4조의2제2항제3호 및 제5조제2항제5호에 따라 회계로 전입되는 전입금
5.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豫受金)
6.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7. 회계의 지역지원계정, 제주특별자치도계정 및 세종특별자치시계정으로부터의 전입금
8. 제2항제7호에 따른 융자금의 원리금
9. 제82조에 따른 전입금
10. 제83조제1항에 따른 일시차입금
11. 제91조에 따른 전년도 결산상 잉여금
12.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회계로 귀속되는 수입금

② 회계의 지역자율계정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자치단체의 다음 각 목의 사업에 대한 보조

가. 성장촉진지역, 특수상황지역, 농산어촌 및 도시활력증진지역 등의 개발사업으로서 다음 각각의 사항을 통합하여 실시하는 기초생활권 생활기반의 확충과 관련한 사업

- 1) 「섬 발전 촉진법」에 따른 섬 발전에 관한 사항
- 2)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에 따른 지방소도읍 육성에 관한 사항
- 3)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접경지역 개발에 관한 사항
- 4)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생활환경 정비, 전원마을 조성, 농촌농업생활용수 개발에 관한 사항
- 5)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농어촌 개발에 관한 사항
- 6) 「어촌·어항법」에 따른 어촌 개발에 관한 사항
- 7)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개발사업에 관한 사항
- 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도시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 9) 「산림기본법」과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촌 개발에 관한 사항
- 10) 「수도법」에 따른 지방상수도 개발에 관한 사항
- 11)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에 따른 어촌특화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나. 지역사회기반시설의 확충 및 개선 관련 사업

다. 지역의 문화·예술·체육 및 관광자원의 개발 및 확충 관련 사업

라. 지역의 물류·유통기반 확충 등 산업기반 조성 등에 관한 사업

마. 지역의 특성 있는 향토자원의 개발 및 활용에 관한 사업

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의 보조사업

2.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조사·연구사업에 필요한 경비
3.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의 원리금 상환
4. 제83조제1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5. 계정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경비

6. 회계의 지역지원계정, 제주특별자치도계정 및 세종특별자치시계정으로의 전출금
7. 그 밖에 지역균형발전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의 자금의 용자 등 필요한 경비의 지원
- ③ 제2항제7호에 따른 용자의 대상·조건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9조(지역지원계정의 세입과 세출) ① 회계의 지역지원계정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세법」에 따른 주세의 100분의 60
2.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회계에 귀속되는 개발제한구역 보전 부담금
3.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6제1항에 따라 회계에 귀속되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
4.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5.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6. 회계의 지역자율계정, 제주특별자치도계정 및 세종특별자치시계정으로부터의 전입금

7. 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16호에 따른 용자금의 원리금

8. 제83조제1항에 따른 일시차입금

9. 제91조에 따른 전년도 결산상 잉여금

10. 제77조제1항에 따른 회계의 소속 재산의 임대료 및 매각대금

11.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회계로 귀속되는 수입금

② 회계의 지역지원계정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초광역권 활성화 및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통·물류망 확충 관련 사업에 대한 출연·보조 또는 용자

2. 지역특화산업 및 초광역권산업의 육성과 투자 및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련된 사업에 대한 출연·보조 또는 용자

3. 지방대학의 경쟁력 향상 및 지역인적자원의 개발 관련 사업에 대한 출연·보조 또는 용자

4. 지역의 과학기술 진흥 및 특성화 관련 사업에 대한 출연·보조 또는 용자

5. 공공기관·기업 및 대학 등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지방이전에 관한 사업에 대한 용자 등 필요한 경비의 지원

6. 지역의 문화·관광자원 육성, 지역고유정신문화 및 지역가치 발굴·선양, 환경 보전 사업 등에 대한 출연·보조 또는 용자

7. 지역의 주요 성장거점에 대한 출연·보조 또는 용자

8. 관련 법령에 따라 지방으로 이관되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이관사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

9.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사업에 필요한 경비

10. 초광역권 활성화와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한 조사·연구사업에 필요한 경비

11.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의 원리금 상환

12. 제77조제1항에 따른 소속 재산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경비

13. 제83조제1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14. 계정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경비

15. 회계의 지역자율계정, 제주특별자치도계정 및 세종특별자치시계정으로의 전출금

16. 그 밖에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자금의 용자 등 필요한 경비의 지원

③ 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16호에 따른 용자의 대상·조건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국가는 제2항제8호와 관련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지방으로 이관되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이관사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여야 한다.

제84조(예산편성 절차상의 특례) ① 기획예산처장관은 「국가재정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예산안편성지침을 작성할 때에는 회계 예산의 특수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지방시대위원회 의견의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78조제2항·제79조제2항·제80조제2항 및 제81조제2항에 따른 사업에 대한 다음 연도의 예산신청서를 작성하여 매년 4월 30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시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신청서 및 지방시대위원회의 의견을 기초로 작성한 다음 연도의 예산요구서를 매년 5월 31일까지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지방시대위원회는 균형성장정책의 투자방향에 관한 의견과 제11조에 따른 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 회계의 예산편성에 관한 의견을 매년 6월 15일까지 기획예산처장관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⑤ 기획예산처장관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예산편성에 관하여 제4항에 따른 지방시대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지방시대위원회는 회계의 운용을 심의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분야의 전문가, 이해관계인 등 국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85조(세출예산의 차등 지원) ① 정부는 회계의 세출예산을 편성할 때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상황 및 제11조에 따른 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원규모·보조비율 등에 차등을 둘 수 있다.

② 정부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시 우선 반영하고, 사업별로 지원규모·보조비율 등에 차등을 둘 수 있다.

1.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효과가 미치는 사업을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

2. 제78조제2항의 사업 중 둘 이상의 시설을 복합화하여 건설하는 사업

3. 제78조제2항의 사업 중 성장촉진지역에 대한 지원 사업

4. 그 밖에 지역의 경쟁력과 투자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정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기업유치 등 지역경제활성화의 성과를 평가하여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